이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안전총괄과

제정 2004·12·13 조례 제523호 개정 2007·7·2 조례 제664호 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천시안전관리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- 1.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- 2. 건축물, 교량·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3.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4.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
- 5.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
- 6. 기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- 제3조(구성) ①자문단은 관내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 가 부족할 경우 타 시·군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 -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.
 - 1.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 수
 - 2.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(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)
 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 문기관 소속의 전문가
 - 4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.
- 제4조(임기) 단장,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

촉할 수 있으며,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 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
- 제5조(단장과 부단장의 직무)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 괄한다.
 -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자문단회의) ①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 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·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의견청취)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9조(안전점검 및 상담실시)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

경우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결과보고)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 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회의록 등)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회의안건,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간사)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역 협력담당이 된다. 〈개정 2007·7·2〉
- 제13조(수당 등)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안전점검·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자문단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〈2007·7·2 조례 제66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⑩생략

① 「이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2조 중 "재난방재담당"을 "지역협력담당"으로 한다.

① 생략